

커미셔너의 명령

대상: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 인근에 거주하거나 통근, 통학하는 모든 사람 및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 인근에 거주하거나 통근, 통학하는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 인근 우편번호 11205, 11206, 11211, 11249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활동성 홍역이 발병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이래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250건이 넘는 홍역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신규 감염이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그 숫자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역은 매우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폐렴이나 뇌의 부종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홍역 사례의 대략 3분의 1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홍역은 연령과 상관없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어린이, 임산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성인은 홍역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역은 환자로부터 질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타인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곳의 공기 및 표면 위에서 최대 2시간가량 생존하며 면역이 약한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감염자가 최근에 머물렀던 장소 인근에 머무르는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무척 큼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높지만,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은 홍역의 전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홍역이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있으며 이번 발병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대체로 사라졌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를 유치원과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에서 홍역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에 거주하는 주민 중 높은 비율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의 홍역 발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뉴욕시 현장 556 섹션에 의거하여 보건부는 뉴욕시 내의 전염병을 제어하고 공중 보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공적 방해 요소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법 3.01 섹션에 의거, 현재 발생한 위협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공중 보건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저에게는 공중 보건 긴급 상황을 선포하고 명령을 공표하며 도시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에서 진행 중인 홍역 발병이 뉴욕시의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거나 해당 주민이 이미 홍역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에 거주하며 MMR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주민은 뉴욕주 행정법 §17-142에 정의된 바에 의해 질병 발병을 지속시킴으로써 불필요하고 예방이 가능한 위험 상황을 지속, 공적 방해 요소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법 §3.07에 의거하여 그 누구도 "공중 보건 및 모든 개인의 인명이나 건강에 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거나 조력해서는 안 되고 또는 인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방 활동이나 그에 합당한 모든 행동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써 다음을 명령하였습니다. 우편번호 11205, 11206, 11211 및/혹은 11249 지역 내에 거주, 근무, 체류하며, 제가 서명한 이 명령이 발효된 후 48시간 이내에 MMR 예방접종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모든 분은 해당 주민이 홍역 면역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보건부 기준에 따라 이 조치에 대해 의학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는 문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또한 명령하였습니다. 우편번호 11205, 11206, 11211 및/혹은 11249 지역 내에 거주, 근무, 체류하며, 제가 서명한 이 명령이 발효된 후 48시간 이내에 MMR 예방접종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모든 6개월 이상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가 홍역 면역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보건부 기준에 따라 이 조치에 대해 의학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는 문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당 어린이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2019년 4월 17일로 예정하고 있는 다음 뉴욕시 보건국(New York City Board of Health) 회의에서 이 명령을 지속 혹은 철회할지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자: 2019년 4월 9일

의학 박사 Oxiris Barbot
보건부 커미셔너

경고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뉴욕시 보건법 §3.05 위반이며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위반한 자는 민형사상 벌금, 몰수, 처벌,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분은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 법무 자문위원인 Thomas G. Merrill 앞으로 서신이나 팩스를 발송하여 주십시오: Thomas G. Merrill, General Counsel,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42-09 28th Street (WS 14-38) Long Island City NY 11101-4132 tmerrill@health.nyc.gov 전화번호: 347-396-6116 팩스: 347-396-6087 해당 서신에는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이유를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